

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

제출법인	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		
	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⑦ 창업일 년 월 일	

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	⑧ 창업중소기업 []	⑩ 창업보육센터사업자 []	⑫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[]
	⑨ 청년창업중소기업 []	⑪ 창업벤처중소기업 []	⑬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[]
⑭ 재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[]			

창업 지역	⑮ 수도권 외의 지역 []		⑯ 수도권(인구감소지역) []	
	⑰ 수도권(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) []		⑱ 수도권(수도권과밀억제권역) []	

수입금액	⑲ 1억4백만원 이하 []	⑳ 1억4백만원 초과 []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감면세액계산내용

기본 감면 (최저한세 적용)	② 감면대상 산출세액	② 감면비율	25%	[]
			50%	[]
			75%	[]
			100%	[]
	③ 기본 감면세액(② × ②)			

추가 감면 (최저한세 배제)	1. 공제요건 :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[] 여 [] 부 가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물류산업 : 10명 나. 그 밖의 업종 : 5명			
	2. 고용증가 인원 계산			
	④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⑥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(④-⑤)	
	명		명	
	⑦ 감면대상 산출세액 (=②)	⑧ 감면비율 (=③)	⑨ 고용증가율 (⑥/⑤)	%
			⑩ 한도율	50%(25%)
			⑪ 추가감면율 Min(⑨, ⑩)	%
⑫ 추가 감면세액(⑦ × ⑪)				
⑬ 총 감면세액[Min{(③+⑫), 5억원}]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
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⑬, ⑭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.
-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"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"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.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, 같은 조 제1항(100% 감면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, 제6항(100%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명세서

사업연도					
제출법인	① 법 인 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생년월일		
	⑤ 소재지 (전화번호:)				
제출내용					
1. 벤처기업 확인 명세					
⑥ 벤처확인유형	⑦ 최초확인일	⑧ 재 확인일	⑨ 벤처유효시작일	⑩ 벤처유효종료일	⑪ 벤처확인기관
2.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명세					
⑫ 기자재명		⑬ 모델명	⑭ 유효기간시작일	⑮ 유효기간종료일	
3.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제품 명세					
⑯ 인증대상품목		⑰ 모델명	⑱ 유효기간시작일	⑲ 유효기간종료일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조제2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"벤처기업 확인 명세"란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.

2. "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명세 제품 명세"란: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의 내용을 적습니다.

3. "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명세서"란: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또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수소에너지설비 인증서의 내용을 적습니다.